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2-17호
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간제근로자(특별연구원.연구원)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
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간제근로자(특별연구원・연구원)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22일
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

□ 최종 합격자 명단

응시분야	응시번호	합격자(휴대전화 끝 4자리)	비 고
특별연구원 나급 (고고)	1	이○섭(1536)	
	2	조○상(0206)	
특별연구원 나급 (국제교류/중국어)	1	김○희(4676)	
연구원 (홍보)	1	윤○민(8491)	
연구원 (교육)	1	박○슬(6424)	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

1. 최종합격자는 채용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일시/장소 : 2022. 8. 1.(월),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(학예연구실)

나. 제출서류

ㅇ 주민등록등・초본 각 1부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)

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

ㅇ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
ㅇ 일반 채용신체검사서(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로 대체 가능) 1부
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
ㅇ 결격사유 확인서 1부.
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
ㅇ 통장사본 1부.
ㅇ 반명함 사진(3×4㎝) 1매.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담당자(041-830-564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자료 1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주민등록표 등·초본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☑주민등록 □여권 □외국인등록 □운전면허) 번호: _____ - _____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2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:

전화번호:

별첨자료 2

결격사유 확인서

ㅇ 성　　명:

ㅇ 생년월일:

본인은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○ 피성년후견인
○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○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○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○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○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2.　　.　　.

확인자:　　(인)
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귀하